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조직

제3장 직무와 해임

제4장 방송

제5장 기재반출

제6장 재정

부칙

작성부서	신문방송국	제정일자	2002. 03. 01.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직 책	담 당	실무국장	주간교수	학생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0. 02. 24.	· 3차 개정
2	2017. 03. 29.	· 신분 및 문구 정정, 기준 명시 및 내용 추가
3	2017. 12. 18.	· 작성부서 및 규정 명칭 변경, 신분 및 문구 정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방송국의 명칭은 “동원방송국(이하 “방송국”이라 한다)”이라 칭하고, 영자 표기는 TBS(Tongwon Broadcasting System)로 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2조(목적) 이 대학교의 학훈 지덕 함양, 기술 창조, 사회 봉사에 입각하여 방송을 통한 교내외의 신속한 보도와 홍보 및 정보교환으로 대학의 방송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3조(방침) 방송국은 대학 언론 기관으로서 방송국 운영 및 방송에 있어서 엄정 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유지한다.

제4조(사업) 방송국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<개정 2017.12.18.>

① 교내 방송

② 교내 행사의 지원

③ 설립 목적에 부합된 사업

제2장 조직

제5조(조직) 방송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<개정 2017.12.18.>

① 대　　표 1명

② 주　　간 1명

③ 직　　원 1명<개정 2017.03.29.>

④ 실무국장 1명

⑤ 국　　원 6명

⑥ 수습국원 약간명

제6조(임원 임용) ① 대표는 총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7.12.18.>

② 주간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3.29.,2017.12.18.>

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7.03.29.>

④ 실무국장, 국원, 수습국원은 이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3.29.>

⑤ 동원학보사 주간과 직원은 방송국의 주간과 직원을 겸한다.<개정 2017.03.29.,2017.12.18.>

제3장 직무와 해임

제7조(임원의 직무) 방송국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총장은 방송국을 대표하고 방송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고 관장한다.

② 주간은 총장을 보좌하고 방송국의 운영 및 방송 제작, 학생 활동 등을 책임 지도한다.

③ 직원은 주간을 보좌하고 학생 국원과 방송 제작,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도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8조(학생 임원의 직무) 실무국장, 국원, 수습국원은 주간 및 직원의 지도 하에 방송 및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한다.<개정 2017.03.29.>

① 프로듀서 : 방송국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<개정 2017.12.18.>

② 엔지니어 : 방송 기자재 설비 및 관리<개정 2017.12.18.>

③ 아나운서 : 방송 프로그램 진행<개정 2017.12.18.>

④ 구성작가 : 방송 프로그램 원고 작성 및 취재<개정 2017.12.18.>

제9조(정기회의) 매주 1회 이상 직원 및 실무국장의 관장 하에 방송 업무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.<개정 2017.03.29.>

제10조(국원 임기) 학생국원의 임기 만료는 최종학년 2학기까지로 한다.

제11조(국원 해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임원은 해임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8.>

1. 국원이 학칙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<개정 2017.12.18.>
2. 이 대학교 및 방송국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<개정 2017.12.18.>
3. 방송국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<개정 2017.03.29., 2017.12.18.>

제4장 방송

제12조(방송프로그램) 매학기 방송기간(시간) 및 방송프로그램은 주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<개정 2017.12.18.>

제13조(방송원고) 방송원고는 사전에 작성, 실무국장을 경유하여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방송한다.

제14조(원고보관) 방송원고는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입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제5장 기재 반출

제15조(기재 반출) 방송국의 시설 및 기재를 반출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7.12.18.>

제16조(변상책임)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기재가 사용자에 의하여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진다.<개정 2017.12.18.>

제6장 재정

제17조(재정) 방송국의 재정은 이 대학교 학생이 납부한 신문방송비와 기타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교비 예산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7.03.29., 개정 2017.12.18.>

제18조(집행) 방송국의 경비 지출은 주간의 동의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나, 주간이 위임을 받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.<개정 2017.12.18.>

제19조(회계연도) 방송국의 회계 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 연도에 준한다.<개정 2017.03.29.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**(경과규정)**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.